

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금지 내용 자세히 보기

□ ‘부정청탁’ 금지

부정청탁	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·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		
14가지 직무	1. 인가·허가·승인 등 직무		
	2. 행정처분·형벌부과의 감경·면제		
	3. 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		
	4.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·탈락		
	5. 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에 개입		
	6. 입찰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		
	7. 특정인 계약당사자 선정·탈락 개입		
	8. 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		
	9.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		
	10. 학교 입학·성적 등 업무		
	11. 질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		
	12.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업무		
	13. 행정지도·단속 등 대상 선정·배제, 감사결과 조작 또는 위법사항 묵인		
	14. 사건의 수사·재판 등 업무		
	15. 1호~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위·권한 남용		
처벌대상		과태료	징계(공직자등)
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		○	○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등			○
부정청탁을 거절·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			○

□ ‘금품등’의 ‘수수 등’ 금지

직무	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(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 아니라,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·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포함)		
금품등	금전·숙박권·초대권 등 재산적 이익,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 편의제공, 채무면제·이권부여 등 경제적 이익 등		
수수 등	수수,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	제공 등	제공,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
직무관련성	금품등		제재
有	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인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		과태료 징계(공직자등)
無	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동일인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		형사처벌 징계(공직자등)
‘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 등’을 알고도 미신고한 공직자등			과태료 또는 형사처벌
공직자등(또는 그 배우자)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등을 한 사람			